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약칭: 성폭력처벌법)

[시행 2021. 1. 21.] [법률 제17507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
- 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정의)** ① 이 법에서 “성폭력범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 <개정 2013. 4. 5., 2016. 12. 20.>
 1. 「형법」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[제242조](#)(음행매개), [제243조](#)(음화반포등), [제244조](#)(음화제조 등) 및 [제245조](#)(공연음란)의 죄
 2. 「형법」 제2편제31장 약취(略取), 유인(誘引)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[제288조](#) 또는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[제289조](#), [제290조](#)(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[제288조](#) 또는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[제289조](#)의 죄를 범하여 약취, 유인,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), [제291조](#)(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[제288조](#) 또는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[제289조](#)의 죄를 범하여 약취, 유인,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), [제292조](#)[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[제288조](#) 또는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[제289조](#)의 죄로 약취, 유인, 매매된 사람을 수수(授受) 또는 은닉한 죄,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[제288조](#) 또는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[제289조](#)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, 운송,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] 및 [제294조](#)(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[제288조](#)의 미수범 또는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[제289조](#)의 미수범,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[제288조](#) 또는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[제289조](#)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[제290조 제1항](#)의 미수범 또는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[제288조](#) 또는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[제289조](#)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[제291조 제1항](#)의 미수범 및 [제292조 제1항](#)의 미수범 중 추행,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, 유인, 매매된 사람을 수수,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 3. 「형법」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[제297조](#)(강간), [제297조의2](#)(유사강간), [제298조](#)(강제추행), [제299조](#)(준강간, 준강제추행), [제300조](#)(미수범), [제301조](#)(강간등 상해·치상), [제301조의2](#)(강간등 살인·치사), [제302조](#)(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), [제303조](#)(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) 및 [제305조](#)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의 죄
 4. 「형법」 [제339조](#)(강도강간)의 죄 및 [제342조](#)([제339조](#)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 5. 이 법 [제3조](#)(특수강도강간 등)부터 [제15조](#)(미수범)까지의 죄
-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.